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2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제한 폐지 (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제한 폐지

(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③ ~ ⑤ (생 략)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u>본다.</u> ③ ~ ⑦ (생 략)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연임할 수 있다.</u> ----- ----- . <u>보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의 경우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장 및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사장의 연임제한 여부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

는 것으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그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임원선출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사장 및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른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06년 4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회장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¹⁾

한편,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2018년 3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임원선출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으나, 특정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사조직화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이사장의 연임을 2회(최장 12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²⁾

1)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9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11, pp.15~16.

2) 2017. 7. 25. 제20대 국회 제352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5.

또한, 다른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조합의 이사장(조합장) 및 조합 중앙회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과 유사한 구조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합 이사장(조합장) 및 중앙회장 연임 관련 입법례

구 분		임기	연임여부	근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신협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제7항
농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제한없음)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
	농협중앙회장	4년	중임 불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5항
수협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1회 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수협중앙회장	4년	연임 불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산림조합장		4년	2회 연임 (비상임 제한없음)	「산림조합법」 제38조제1항
	산림조합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산림조합법」 제104조제4항
지역금고 이사장		4년	2회 연임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3항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제5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년	2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중소기업중앙회장	4년	1회 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2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②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³⁾되어 다른 법률에 따른

3) 2026년 2월 12일에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인 점,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경제 단체들⁴⁾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⁵⁾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에서도 중앙회와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적인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성을 가진 정책 집행의 협력 주체로서 현행의 임원 연임제한 규정은 조직의 책임성과 내부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며, 오히려 연임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더하여 중임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장과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할지 여부는 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선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당초 법률을 개정하여 이사장 및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경위와 취지, 유사 입법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단체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 재산공개 의무 등을 부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고시함.